

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4. 5. 19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4년 5월 12일

· 회부일자 : 1994년 5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2 회 임시회

·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4. 5. 19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민교육원장 정상현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이 「청원군 가덕면 시동리」에서 「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25」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불부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2조(위치)중 「시동리」를 「한계리 산25」로 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윤 태 무)

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도민교육원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행정구역상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조례 제2조 위치 조문중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를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25로 불부합한 조례조문의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